

대주코스(주)	공정거래규정	문서번호
개정일: 2023-08-01		개정차수: 1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1	2023-08-01	2023-08-01	초도 제정

대주코스(주)	공정거래규정	문서번호
개정일: 2023-08-01		개정차수: 1

이 규정은 대주코스(주)가 시장에서 어느 한쪽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률 준수

우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서면거래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사용한다.

3. 부당한 약정 금지

- ①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약정)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의 경우 부당한 약정으로 본다.
 - 1)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2)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3)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4)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전가시키는 행위

4. 시장지배적 지위 등 남용 금지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거래 상대방의 사업방식이나 사업활동에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주코스(주)	공정거래규정	문서번호
개정일: 2023-08-01		개정차수: 1

5.담합 및 부정경쟁 금지

-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6.자금세탁 금지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지식재산권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조세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9.조달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